##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2875

발의연월일: 2021. 10. 18.

발 의 자:권칠승·박상혁·김종민

김영배 · 강병원 · 임종성

고영인 · 김철민 · 박 정

김민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운 전자의 안전운전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 및 사고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가해 운전자의 연령대가 높아 질수록 교통사고에 따른 치사율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고령운전자 관련 제도는 교통안전교육 및 정기 적성검사의 강화에 그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고령운 전자 증가 추세에 따른 대책 수립이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제도는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규정하고, 고령운전자 차량의 식별이 가능한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 ·배부·부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위협운전

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노화에 따른 신체·인지 기능의 변화에 기인한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반영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95조의2 및 제151조의 2제3호 신설).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조의2(고령운전자 표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고령운전자 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 제7조의3(고령운전자에 대한 위협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 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제7조의2에 따라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46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장에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① 고령운전자가 제93 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 2. 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 3. 보상금을 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증을 받은 경우
-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51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의3을 위반하여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등을 위협운전한 사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선 설>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고령운전자표지"라 한다)를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고령운전자는 다른 차의 운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에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할 수 있다.        전조리를 본착하고 운전한 대한 위협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이 등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를 가는 제7조의2에 따라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제7조의2에 따라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제7조의2에 따라 고령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제7조의2에 따라 고령운 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
는 사람에 대하여 제46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위협 또는 위해를 가 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

<신 설>

제95조의2(고령운전자의 운전면 허증 자진 반납) ① 고령운전 자가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 라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 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상 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

- 2. 보상금이 과오지급된 경우 3. 보상금을 받은 자가 다시 운 전면허증을 받은 경우
-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보상 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국 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5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제151조의2(벌칙)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신 설>

- 1. 2. (현행과 같음)
- 3. 제7조의3을 위반하여 고령운 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 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등을 위협운전한 사람